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21회계년도 (2021년 03월 01일부터
2022년 02월 28일까지)

붙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임회인)서명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제81423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 구 한 의 대 학 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2. 04 .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

감 사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국장

성 명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대구한의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 년 4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9 호)

감 사 남대하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2022년 4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 사 장 기우항 (인)

피감사기관장

년 월 일

대구한의대학교

총 장 (인)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21회계년도 (2021년 03월 01일부터
2022년 02월 28일까지)

붙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임회인)서명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 구 한 의 대 학 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)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)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2. 04 .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

김도연



감 사

남대하

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경 리 팀 장

성 명

김보라

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우한의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우한의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대우한의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 년 4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도연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9 호)

감 사 남대하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2022 년 4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 사 장 기우항 (인)

피감사기관장

2022 년 4 월 일

대우한의대학교

총 장 변창훈 (인)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21회계년도 (2021년 03월 01일부터
2022년 0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임회인)서명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2. 04 .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

김도연



감 사

남태하

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총무과장

성 명

김태영

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2003.2.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년 04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로연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218 호)

감 사 사남대리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2022년 04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 사 장 기우향 (인)

피감사기관장

2022년 04월 일

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

병원장 김종대 (인)

교 육 부 장 관 귀하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21회계년도 (2021년 3월 1일부터
2022년 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임회인)서명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
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
·이사장·대학교·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
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
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
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

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 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2.

학교법인

감 사

감 사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

성 명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 육 부 장 관 귀하

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2003.2.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학교법인 제한학원(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제한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년 월 일

학교법인 제한학원

감 사 김로연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6218 호)

감 사 남태하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학교법인 제한학원

이 사 장 기 우 향 (인)

피감사기관장

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

병원장 최 해 윤 (인)